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발 의 자 : 김재진 의원 외 17명
- 의안번호 : 제1693호
- 발의일자 : 2024년 4월 3일
- 회부일자 : 2024년 4월 8일

2. 제 안 이 유

- 위원회 구성 관련하여 간사가 되는 공무원의 담당 업무로 '산사태' 관련 업무 뿐만 아니라 「산림보호법」 및 「사방사업법」에 명시된 '사방'을 함께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 가. 간사가 되는 공무원의 업무 범위를 추가하고, 시장 임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4조)
- 나. 용어를 정비함(안 제5조, 안 제11조, 안 제15조)

4. 참 고 사 항

- 가. 관계법령 : 「산림보호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비대상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5. 검토 의견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간사가 되는 공무원의 담당 업무로 ‘산사태’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산림보호법」 및 「사방사업법」에 명시된 ‘사방’을 함께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며, 그 밖에 일부 용어를 수정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제2항에 따라 동 조례로 위임되어 구성 및 운영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명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은 동법 시행령 제32조의7을 준용하여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조례 제4조1)에서는 위원회 임명 또는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간사와 관련하여 ‘산사태 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 중에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 위촉하는 사람의 분야로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용해 ‘산사태’와 ‘사방’을 함께 명시하는 것에 대해 이견 없음.
- 또한, 현재 위원회 구성상²⁾ 간사는 위원회 심의활동을 하는 위원이 아니므로 ‘시장에 임명하는 사람’으로 표현하기 보다는 안 제4조제4항과 같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표현하고, 간사의 구체적인 업무를 명시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1)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제4조 붙임 참조

2)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 산사태, 토질, 지질, 산림, 방재 등 산업,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10명

계(명)	내부위원 (당연직)	외부위원(위촉직)				
		수리/수문	환경	재난	산사태	토질/지질
10	3	1	1	2	2	1

[붙임]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 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 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3.22.>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7.13.>
1.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업무담당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4. 관할 지역의 주민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장이 지명한다.
-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사태 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7.13.>